

창원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나52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제

담당변호사 정영덕

피고, 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1. 18.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단3657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 E과 제1심 공동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제1심 공동피고'를 생략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 D, E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9. 10. 17. 접수

제17953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9. 7. 11. 접수 제125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공동피고 D, E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각 항소는 모두 취하간주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0. 3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F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0.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위 회사에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진행되지 않자 B은 2019. 5.경 원고에게 2019. 10.말경까지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2019. 10. 7. 위 계약금을 2020. 5.말경까지 변제하되 변제일까지 월 2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C, D,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던 3/4지분에 관하여 B에 2019. 7.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9. 7. 11. 접수 제125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9. 10. 1.자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9. 10. 17. 접수 제17953호로 말소되었다.

라. 한편,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E에게 2019.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9. 10. 17. 접수 제179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재정난에 시달려 오다 2019. 10. 1.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 E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해제는 취소되어야 하고, 위 피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은 B이나 대출금 확보 등 목적으로 나머지 피고, D, E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바,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G는 선의이므로, 피고는 B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 E은 B에 대한 약정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을 대위하여 3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그 변제기가 이 사건 합의해제 이후이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이 보호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B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이 원고에게 2019. 5.경 위 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위 채권이 실제로 성립한 이상, 2019. 10. 1.자 이 사건 합의해제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달리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B의 사내이사 E, D 및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합의해제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 10. 17.자 매매계약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인 B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이행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종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등 종전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합의해제는 B과 피고, D, E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쌍방 내지 어느 일방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와 협업으로 제품생산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인데, 위 I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이전등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동기에 불과할 뿐이어서 가사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해제에 있어서 일방의 의무불이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3) B의 2019. 9. 16. 이사회 의사록 기재에 의하면 'K 이사, L 이사의 제안으로 공장 신축을 진행하였으나 두 사람의 부정행위 및 사해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우므로 공장 신축을 무효화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해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B에 경료된 이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4) 2019. 9. 16.자 이사회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고

이후에 평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평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공장을 신축된 이후에 피고, D, E이 B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B이 이 사건 합의해제 전에 피고, D, E에게 평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선의 주장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및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위 피고와 채무자와의 관계, 앞서 본 합의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D, E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 D, E은 B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9. 10. 17. 접수 제17953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9. 7. 11. 접수 제125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구년, 판사 정강은, 판사 조유리